

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

(2026년 제6회)

1. 안 건 명	평택시 포승읍 회곡리 891-1번지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			
2. 심의개요	심의일시	26. 8. 31. ~ 9. 7.	심의장소	서면심의
	신 청 자	(주)에스탑화성	참석위원	5명
3. 조건사항	- Expansion joint 구조상세 추가 작성하여 착공전 제출 바람 - Hoist 접합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Hoist업체와 협의하여 표시하여 착공전 제출 바람 - 현장용접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철골제작 전에 위치를 확정하기 바람, 현장 용접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함 - 지반보고서 상의 4개 시추공의 실측수위가 GL-3.6m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데, 과 설계가 될 우려가 있으며 시공학적 관점에서는 각 시추위치에서 측정된 실제 수위값에서 안전여유를 고려한 각각의 설계 수위값이 결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. 현재의 설계수위값 일괄 적용은 시공상 부등침하나 특히 방수하자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, 설계수위 일괄 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구조 및 시공 문제를 해당 설계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시공사와 감리자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함 - 각 지층별 복합지반 물성치 적용은 아래식을 추가로 검토하여 산정하기 바람, 아래식에서 구한 복합지반 물성치를 사용하여 기초지반지지력 및 침하안정성 확보여부를 기존 검토에 추가로 검토하여 확인하기 바람 * 점착력복합지반 = 점착력원지반*(1-치환율)+점착력개량체*치환율 내부마찰각복합지반 = $\tan^{-1}[\text{개량율} * \text{응력집중(저감)계수} * \text{개량체} * \tan(\text{내부마찰각개량체})]$ - 제출하신 조치사항 및 조건부 의결사항을 착공전 설계도서에 반드시 수록하시어 현장 시공에 반영되어야 하며, 구조안전심의 조치계획서 및 변경된 설계도서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 추후 현장 점검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			
4. 심의결과	[조건부의결]			
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26년 9월 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				